서울지방우정청 공고 제2018 - 77호

2018년도 서울지방우정청 우정9급(계리)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공고

2018년도 우정9급 우정서기보(계리)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선발예정인원 증원)하여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8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선발 예정인원(증원내역)

시험명	직급(직종)	모집단위 구분	선발예정인원		
			당초	증원	최종
2018년 공개경쟁채용시험	우정9급 우정서기보 (계리)	서울지방우정청(일반)	28	13	**41**
		서울지방우정청(장애인)	2	1	**3**
		서울지방우정청(저소득)	1	-	**1**

2. 응시자 주의사항 및 기타사항

○ 위 변경공고 이외에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시험시간, 응시자격,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가산점 적용, 응시자 주의사항 및 기타사항 등 **변경공고에 없는 내용은 『2018년도 서울지방우정청 우정9급(계리)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서울지방우정청 공고 제2018-9호, 2018.3.5.)와 동일합니다.**

○ 본 변경 공고문과 당초 공고문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se)를 통해서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시험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02-6967-91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우정청 공고 제2018 - 9호

2018년도 서울지방우정청 우정9급(계리)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5.28. 변경공고 반영)

2018년도 우정9급 우정서기보(계리)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5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선발 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 급 (직 종)	시험구분	선발예정인원 (총 31명)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3과목
우정9급 우정서기보 (계리)	공개경쟁 채용시험	일 반 : 41명 장 애 인 : 3명 저소득층 : 1명	한국사(상용한자 포함) 우편 및 금융상식(기초영어 포함) 컴퓨터일반

※『우편 및 금융상식』학습자료는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채용공고)에 공고문과 함께 게시

□ 모집단위(지역)별 구분모집표

(단위 : 명)

구 분	모집단위(지역)	선발인원
서울지방우정청(일 반)	서울지방우정청 관할 전지역 (국제우편물류센터 포함)	41
서울지방우정청(장애인)		3
서울지방우정청(저소득)		1

※ 국제우편물류센터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 193번길 40-32(운서동 2842-16)

※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8항에 따라 합격자는 당해 모집단위 임용일로부터 5년 이내 타 지역(기관)으로 전보 될 수 없습니다.

※ 우정9급(계리)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 후 서울지방우정청 관할 우체국, 집중국, 국제우편물류센터 등 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 계리직종의 직무내용은 우체국금융업무·회계업무·현업창구업무·현금수납 등 각종 계산관리업무 및 우편통계 관련 업무 등입니다.

2. 시 험 방 법

○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배점비율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객관식 4지 택일형 20문항
- 상용한자는 한국사에, 기초영어는 우편 및 금융상식에 각 1~2문항씩 포함하여 출제됨
- 시험시간 : 60분 (문항당 1분 기준, 과목별 20분)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할 수 없습니다.(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음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 ·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일반분야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일반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응시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보호)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보호)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인한 해외체류 종료 후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급여(보호)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보호)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어야 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 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일반분야에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일반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등)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응시자 거주지역 제한 안내

○ **응시자는 공고일(2018. 3. 5)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채용시험이 시행될 경우 응시자 거주지역 제한 내용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접수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자	합격자 발 표
우정9급 우정서기보 (계리) 공개경쟁채용시험	2018.6.5 ~ 6.8 (취소마감일 : 6.11, 21:00)	필기시험	2018. 7.10.	2018. 7.21.	2018. 8.21.
		면접시험	2018. 8.21.	2018. 10.6.	2018. 10.11.

○ 모든 시험 일정은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se/) 에 공고합니다.

○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 일에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 및 원서접수사이트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합격을 통지합니다.

○ 필기시험 성적 확인 방법·일정은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시 안내하며, 본인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se/) '2018년도 우정9급 (계리) 공개경쟁채용 인터넷 원서접수 바로가기' 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

○ 응시수수료 : 5,000원

※ 수수료 결제 방법에 따른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응시자가 응시수수료를 결제(납부)하지 않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응시 포기로 처리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원서접수 마감 후 확인절차를 거쳐 응시료를 환불하며, 응시원서 접수시 저소득층 대상여부 조회 동의 및 반환계좌를 등록하여야 합니다.(별도의 처리비용은 반환되지 않음)

○ 사진등록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으로 사진 등록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규격 : 반명함 증명사진, 크기 3.5cm×4.5cm(140×180pixel), 파일용량 100Kbyte미만, 파일형식 JPG, GIF

※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 모자,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얼굴이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내용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유형(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붙임 안내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원서접수 시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모집단위(지역)별 제1차시험 응시지역(시험 볼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 역 별	서울특별시
제1차시험 응시지역	서 울

6. 가산점 적용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적용**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국가직공무원 직렬 공통으로 적용되었던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2015.5.6.)에 따라 2017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나.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 등에 확인

다. 의사상자 등 대상자

○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이 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등 대상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의사상자 등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044-202-3258) 등에 확인

라.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방법으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 타 사 항

가.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 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의 내용은 나라일터(www.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injae.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 또는 통지하겠습니다.

바. 향후 우정9급 우정서기보(계리)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최소인원으로 실시되거나 실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02-6967-91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